

안산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

관한 조례안

(김진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59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3.

발의자 : 김진숙 의원 외 8 명

1. 제정이유

- 시민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사업추진 규정(안 제4조)
-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비밀의 유지 규정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1. 2. 25. ~ 3. 3. (6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 1】

안산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웰다잉(Well-Dying)(이하 “웰다잉”이라 한다) 문화 조성”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추진)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
2.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
3.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
4.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5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제6조(호스피스의 날) 시장은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의 유지)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진숙 의원 대표발의

안산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94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3월 23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 원장

수정이유

- 내용을 명확하게 자구 정비

주요골자

- “날” 을 “나날”로 수정 (안 제2조)
- “문화 교육” 을 “문화교육”으로 수정 (안 제4조제3호)

안산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날” 을 “나날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3호 중 “문화 교육” 을 “문화교육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웰다잉(Well-Dying)(이하 “웰다잉”이라 한다) 문화 조성”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나날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4조(사업추진)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웰다잉 <u>문화 교육</u> 인력양성 사업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업추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문화교육</u> -----</p> <p>4. ~ 6. (원안과 같음)</p>